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80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24.

발 의 자 : 이인선 · 고동진 · 배준영
김태호 · 최수진 · 김정재
이달희 · 김기현 · 성일종
최은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를 제공하여 출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.

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,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 13조의2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p>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 다.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. 1.·2. (생략) ③ ~ ⑥ (생략)</p>	<p>----- --.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